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 : 펀드명 변경, 모펀드 투자비중 변경 및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	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"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아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되,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제2조 제8호 가 목의 베트남 관련 주식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%이하로 한다.</p> <p>나. 제2조 제8호 나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하로 한다.</p> <p>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KB 베트남 포커스 (삭제)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"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좌동)</p> 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아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되,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한다. <u>다만, 제2조 제8호 가 목의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가. 제2조 제8호 가 목의 베트남 관련 주식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100%이하로</u> 한다.</p> <p>나. 제2조 제8호 나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미만</u>으로 한다.</p> <p>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</p>
투자설명서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

(추가) (4)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
 가입자에 대한 과세
 <별첨> 참고

- 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
-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<별첨>

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. 자세한 관련사항은 "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가입기한	2017년 12월 31일까지
가입한도	1인당 3천만원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
대상펀드	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
세제혜택	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※ 채권이자, 주식배당,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,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임
세제혜택적용기간	가입일부터 10년까지

2. 변경(예정)일 : 2017년 09월 22일